

식품중 동물약품잔류 방지를 위한 안전사용 II

- 제11차 CODEX 식품중 동물약품잔류 분과위원회 활동

박 종 명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독성화학과장

■ 식품중 동물약품 잔류허용한계 7단계 검토

◇ 몇몇 대표들은 잔류허용한계(MRLs)를 검토할 때, 특히 JECFA에 의해 일일섭취허용량(ADIs)과 MRLs가 수정된 경우, JECFA의 평가에 대한 보고서와 논문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MRLs 설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고서와 논문이 적기에 출판될 것을 요구하였음. 또한, JECFA와 EC의 동물용의약품 위원회(CVMP/EC) 같은 동일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과학적 기구들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본 위원회는 그러한 협력과 조정이 전문가 참여 형태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 식품중 동물약품 잔류허용한계 7단계 검토 결과

☞ 소 성장호르몬(r - BOVINE SOMATOTROPIN)

소 성장호르몬(r-BST)는 제21차 Codex총회에서 BST의 MRLs 채택에 대한 논쟁을 제22차 회의로 연기시켰음. 제22차 회의에서 네델란드 대표는 EU측 견해를 밝히면서, JECFA와 CCRVDF에 의한 과학적 자료의 재평가 및 일반원칙분과위원회(CCGP)의 BST와 관련된 기타의 정당성 요인(other legitimate factors)의 적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BST의 MRLs 채택에 대한 검토를 연기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으며 이 제안은 투표에 의하여 통과 되었었음.

CCGP는 이 문제들과 관련하여 사무국에서 2종류의 문서를 준비하여 차기 회의 때 회신하기로 하였음. ① CODEX총회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위험분석 골격내에서 기타의 정당성 요인들의 검토, ② BST의 경우 “기타의 정당성 요인들”의 적용

CCGP는 또한 BST의 평가에 대한 전문이 포함된 제50차 JECFA 회의 결과요약 및 결론이 이미 출판·배포되었고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독일 대표는, 최종 독성논문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고 CCGP에 의하여 기타의 정당성 요인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므로 연기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EC 및 국제소비자연맹(Consumers International)의 옵서버와 함께, 어떤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투명한 위험평가 과정 및 의견일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CCRVDF가 사전에 완전한 독성학적 논문과 CCGP에 의한 기타의 정당성 요인들의 검토결과가 필요한 데 아직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음. 독일 대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임무가 소비자 건강보호 및 국제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라 해도, EC는 현재 BST를 투여한 동물 및 관련제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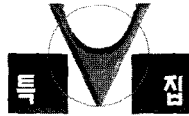


으므로 BST에 대한 MRLs 설정이 시급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음.

67. MRLs 채택을 지지하는 다른 대표단들의 의견은, EC-CVMP 및 JECFA가 BST에 대하여 설정불요(not specified)의 MRL 설정에 이미 동의하였고, 또한 JECFA측이 제50차 회의에서 BST의 재평가 과정에서 EC가 제공한 추가 자료를 이미 검토하였으므로 다음 단계로 진입시키자고 하였음. 이들 대표들은 JECFA 사무국에서 JECFA의 최종보고서 및 독성학적 논문의 출판이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CCGP에 의한 기타의 정당성 요인들(other legitimate factors)의 검토가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의 건강보호와 관련된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음. 또한 그동안 CCRVDF는 다른 물질의 MRLs를 최종 독성학적보고서가 없이도 최종 승인을 위하여 추천한 바 있으며, CODEX총회에서 기타의 정당성 요인들(other legitimate factors)은 CCGP에서 검토하므로 CCRVDF는 과학적 측면만을 고려하라는 지시가 있었음도 지적하였음. 한편 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협정(SPS Agreement)에서는 수입국측에서 과학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BST를 처리한 제품의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나, 총회에서 CCRVDF에게 과학적 측면만을 검토하라는 요청이 있는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는 BST에 대한 MRLs 초안을 제23차Codex총회에서 8단계로 최종 승인 받기 위하여 진전시키기로 동의 하였음. 이 결정은 CCGP에 의한 기타의 정당성 요인들(other legitimate factors)의 검토와 WHO측의 최종보고서 및 독성학적 평가자료가 총회에서의 MRLs 설정의 최종 고려 대상이 됨을 전제로 이루어졌음. 그러나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태리, 네델란드, 놀웨이, 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의 대표들은 위에서 제시된 이유로 BST의 MRLs의 8단계 최종 채택을 위한 진전을 반대하였음. 기타 동물약품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제7단계 재검토 보류(8종)

품 명	축 종	부 위	설정치	한 국	용 도	결과
아바멕틴	소	간, 지방	100	미설정	구충제	보류
		신장	50			
카라졸롤	돼지	근육, 지방, 피부	5	미설정	진정제	보류
		간, 신장	25			
텍사메타손	소, 돼지, 말	근육, 신장	0.5T			
	소	간	2.5T			
클로르테트라 사이클린/옥시 테트라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소, 돼지, 양, 가금	근육	200	근육 100/C 100/O 250/T	항생제	보류
		간	600			
		신장	1,200			
	소, 양	우유	100			
가금	계란	400				
젠타마이신	소, 돼지	근육, 지방	100	근육 100	항생제	보류
		간	2,000			
		신장	5,000			
	소	우유	200			
치암페니콜	소, 닭	근육, 간, 신장, 지방		미설정	항생제	보류
			40T			



② 제8단계 진입 승인(14종)

품명	축종	부위	설정치	한국	용도	결과
알파-싸이퍼메스린	소, 양, 가금	근육, 간, 신장	100T	미설정	해충구제제	승인
		지방	500T			
	소	우유	25T			
	가금	계란	50T			
아자페론	돼지	근육, 지방	60	미설정	진정제	승인
		간, 신장	100			
소 성장호르몬	소	근육, 간, 신장, 지방, 우유	설정불요	미설정	산유촉진제	승인
싸이퍼메스린	소, 양, 가금	근육, 간, 신장	200T	미설정	해충구제제	승인
		지방	1,000T			
	소	우유	50T			
	가금	계란	100T			
디클라주릴	양, 토끼, 가금	근육	500	미설정	구충제	승인
		간	3,000			
		신장	2,000			
		지방/피부	1,000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스트렙토마이신	소, 돼지, 양, 가금	근육, 간, 지방	500T	불검출	항생제	승인
		지방	1,000T			
	소	우유	200T			
페반텔/펜벤다졸/옥스환다졸	소, 돼지, 양	근육, 신장, 지방	100	미설정	구충제	승인
		간	500			
네오마이신	소, 돼지, 양, 산양, 닭, 오리, 칠면조	근육, 간, 지방	500	250	항생제	승인
		신장	10,000			
	소	우유	500			
	닭	계란	500			
스펙티노마이신	소, 돼지, 가금	근육	500	미설정	항생제	승인
		간, 지방	2,000			
		신장	5,000			
	소	우유	200			
틸미코신	소, 돼지, 양	근육, 지방	100	미설정	항생제	승인
		소, 양	간			
	돼지	신장	300			
		간	1,500			
	양	신장	1,000			
세프치오퀸	소, 돼지	우유	50T	미설정	항생제	승인
		근육	1,000			
		간, 지방	2,000			
		신장	6,000			
		우유	100			



■ 식품중 동물약품 잔류허용한계 4단계 검토

● 동물용의약품 4단계 검토 결과 요약

구 분	5단계 진입(17종)	4단계 재검토(1종)
항균물질	테트라사이클린3종(수산용), 벤질페니실린, 스펙티노마이신, 후루메퀸, 다노후록사신, 사라후록사신,	
구충제	에프리노멕틴, 이미도카브, 나리카바진, 목시텍틴(사슴),벤지미다졸3종	
해충구제제	후루아주론, 싸이후루스린	
기 타		클렌부테롤

■ 제 7 및 4 단계에 보류되어 있는 동물약품의 잔류허용한계 검토

◇ 카라졸롤(CARAZOLOL)

carazolol은 22차 총회에서 주사부위의 잔류농도가 ADI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7단계로 반려되었었음. 주사부위 고농도 잔류의 건강상 위험 가능성을 인정하여, 위원회는 모든 MRLs초안을 7단계로 보류시키고 JECFA에 CL 1998/4-RVDF에 포함된 주사부위 잔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 문제를 검토해 주도록 요청하였음.

◇ 세프치오핌(CEFTIOFUR)

세프치오핌의 MRLs은 제48차 JECFA에서 이 물질이 재평가 될 때까지 7단계에 보류되어 있었으므로, JECFA에서 수정한대로 모든 MRLs초안을 8단계로 진전시키는데 동의하였음.

◇ 클렌부테롤(CLENBUTEROL)

이 물질에 관한 어떤 새로운 정보도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오용으로 인한 클렌부테롤 잔류의 우려 때문에 모든 MRLs초안을 4단계로 보류시키기로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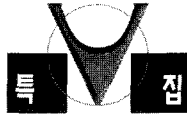
■ 국제식품규격의 최대잔류허용한계 개정

◇ 목시텍틴(MOXIDECTIN)

본 위원회는 제50차 JECFA에서 사슴 조직에 대한 잠정 MRLs이 같은 수준에서 최종 MRLs로 변경되었으며, 이 잠정 MRLs이 1997년도 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으므로, 위원회는 사슴 조직에 대한 최종 MRLs을 6,7단계를 생략하고 5/8단계로 진전시키기로 동의하였음.

■ 식품중 동물약품잔류에 대한 분석방법 및 시료채취의 수행능력에 기초한 범위의 검토

호주 대표는 관련문서를 제출하면서 식품관리를 위한 분석방법의 인증에 관한 FAO/IAEA 합동 자문위원회(Joint FAO/IAEA Expert Consultation on Validation of Analytical Methods for Food



Control)의 주요 요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음. 또한 자문위원회의 결론과 권고사항은 본 회의 직전에 개최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토의되었음을 밝혔음.

호주 대표단은 국제적으로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동연구와 그리고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험실의 적합성에 관련된 문제들의 표준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의 두가지 권고사항은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소위원회에도 매우 중요한 점이었음을 언급하였고, 특별히 언급된 이들 시스템은 GLP와 ISO/IEC Guide 25 이었다. 방법 기준의 동등성, 적격자의 승인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의 전문가 및 확인기술의 부족 등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야 할 중요사항이라고 하였음.

본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 보고서 그리고 다른 국제기구와 Codex 분과위원회의 사업 등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루어질 때 위의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음.

▣ 식품중 동물약품 잔류분석을 위한 통상적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의 확인에 관한 검토

◇ 분석방법에 관한 정보의 편집

미국 대표는 CL 1998/7-RVDF에 대한 회신으로 회원국들에 의하여 제공된 Codex에서 검토된 50 종류의 물질들의 분석방법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였음. 이 사업의 최초 목적은 각국 정부에서 국제식품규격의 MRLs를 충족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방법을 목록화하는 것이었으며, 다음 단계는 동물약품 잔류분석을 위한 인증된 분석방법의 목록화 작업이 될 것임.

◇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관한 소위원회 보고

본 소위원회 의장인 미국의 DR. R. Ellis는 식품관리를 위한 분석방법의 인증에 관한 FAO/IAEA 합동 자문위원회(Joint FAO/IAEA Expert Consultation on Validation of Analytical Methods for Food Control)의 결과는 소위원회의 활동에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며,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위원회는 임무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발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 제2판 제3권 64-69 쪽의 방법 중 현재까지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의 활용
- 실험실간 및 실험자간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된 기타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방법의 성능을 규정하는 것을 IUPAC/ISO/AOAC international에 의해서 확립된 조화된 기준의 원칙을 적용
-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분과위원회(CCMAS)와 기타 국제식품규격 분과위원회와 분석방법의 성능에 관한 문제를 공동으로 재검토
- 분석방법의 재검토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CCFVDF와 JECFA 양측에 더 투명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여기에 이용될 절차 규정의 초안 작성.

JECFA는 제50차 회의 잠정의제에 물질에 대한 분석방법을 검토하는 일차적인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48차 및 그 이전의 JECFA 회의에서도 실무작업단에서 유사한 작업을 하였다고 보고하였음. 또한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별물질에 대한 기록보고자(rapporteur)제도에서 모든 물질을 다음과 같이 4종류 즉 구충제; 항균제; 항원충제, 살충제, 트리파노솜 약제; 성장촉진제, 베타-아드레노리셉터차단제, 진정제로 나누어 팀별로 평가하는 체제로 전환될 것임을 보고하였음.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분석방법 평가의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주사부위의 잔류에 관한 지침

◇ 호주 대표는 CL 1998/4-RVDF 에 포함된 검토문서를 통하여 소비자 안전과 잔류규제감시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되었으며, 한번 투약으로 독성/약리화학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절차를 설명하였음. 앞의 경우는 추정 섭취량이 급성관련량(급성독성이하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휴약기간은 같은 방법으로 주사부위의 잔류가 급성관련량 이하로 되도록 설정하여야 하고, 뒤의 경우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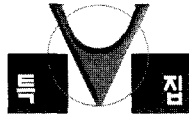
많은 대표들은 주사부위의 고도의 잔류물질이 섭취되었을 경우 잠재적인 건강상 위험성과, 급성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JECFA가 독성의 우려가 있는 물질과 급성 관련량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FAO/WHO합동 식품섭취 전문가문위원회(Joint FAO/WHO Expert Consultation on Food Consumption)와 급성위해 노출평가에 관한 화학물질의 노출평가와 최근활동에 대한 농약잔류분과위원회의 권고를 받았음. 또한 주사부위 잔류분석을 위하여 특별한 시료채취 계획이 개발되어야 함이 제안되었음. 한국대표는 동 문서의 22절 두번째 문단의 삭제를 요구하였고, 기타 주사부위의 특정화, 주사부위에 대한 국제적, 국내적 실무규제관리 등이 거론되었음. 본 위원회는 검토문서, 제48차 JECFA 보고서의 정보, 제3단계 검토를 위한 회람문서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기초로 주사부위의 잔류에 관한 지침을 준비하도록 호주측에 요청하였으며, 네덜란드는 자료를, EC와 COMISA는 의견을 호주에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 지침은 문서로 만들 것을 제안 하였음.

■ 우유와 유제품에서 동물약품 잔류 방지

◇ 미국대표는 CL 1997/27 RVDF(Control of Veterinary Drug Residues in Milk and Milkproducts)를 발표하였음. 이 문서에는 우유생산에서 특별한 관리기준의 필요성; 식품 안전성과 품질문제를 포괄하는 범위의 확대; 우유에 존재할 수 있는 항생제를 포함하는 모든 동물약품의 최대잔류허용한계(MRLs)설정의 필요성; 우유 중의 동물약품잔류 감소와 방지를 위하여 우유생산 시 일괄 생산 체계(Integrated Systems)의 필요성; 젖소를 포함한 모든 유생산 동물에의 확대 등이 포함되었음. 본 위원회는 위 문서가 식품중 동물약품 잔류방지를 위한 규제계획의 설정을 위한 Codex지침(Codex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Regulatory Programme for Control of Veterinary Drug Residues in Food)의 부록성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문서가 CAC/GL 16-1993의 부록의 형식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음.

■ 평가 혹은 재평가가 요구되는 동물약품의 우선 순위 검토

◇ 소위원회(ad hoc Working Group on Priorities)의 의장 Dr. J. Owusu(호주)가 회의보고서 및 권고사항을 보고하였음. Ivermectin(우유), dicyclanil, lincomycin, melengestrol acetate 이 우선순위에 포함되었음. 기존의 우선순위에서 cyhalothrin, metrifonate, temephos 만이 평가되지 않았거나 JECFA 잠정의제에 포함되어 있음. Deltamethrin과 permethrin은 잔류농약에 관한 FAO/WHO 합동회의(JMPR)에서 평가되었고, 독성화학적 평가는 농약잔류분과위원회(CCPR)의 주기적 재검토 계획에 의하여 2000년과 1999년의 JMPR 에서 각각 평가될 것임. 이들은 잔류성 평가를 위하여 1999년



JECFA의 제52차 회의의 잠정의제로 남아 있음. 위에서와 같이, 평가를 위하여 우선평가대상에 추가된 물질이 몇개 되지 않아, 2001년의 JECFA회의 개최 여부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이 일어났으며, 이것은 JECFA와 CCRVDF의 사업과 절차진행의 계속성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음.

천연호르몬(estradiol-17, progesterone, testosterone)이 어떠한 이유로 평가를 위하여 JECFA의 잠정의제에 포함된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으나, 이것은 최신의 모든 정보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JECFA사무국의 주도로 잠정의제에 포함시켰음이 지적되었음.

몇몇 대표들은 성장촉진제로서 lincomycin과 melengestrol acetate의 잠재적인 사용가능성과 그 제한을 표시하였음. lincomycin에 대한 우려는 성장촉진제로서 항생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었음. 본 위원회는 이러한 물질들이 우선평가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우선평가대상 목록에 남겨 두기로 하였음.

● 평가 혹은 재평가가 요구되는 동물약품의 우선 순위 목록

구분	CCRVDF 요구	JECFA 권고
1999 제52차	델타메스린, 퍼메스린, 카라졸롤, 돼지성장호르몬, 폭심,	아바멕틴, 아자페론, 도리멕틴,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스트렙토마이신, 천연호르몬(에스트라디올, 푸로제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치암페니콜
2000 제54차	싸이할로스린, 디싸이클라닐, 이버멕틴, 린코마이신, 테페포스, 멜렌제스트롤, 메트리포네이트,	싸이퍼메스린, 알파싸이퍼메스린, 푸루메퀸
2001 제56차		이미도카브

■ 소수 축종의 동물약품 최대잔류허용한계 설정을 위한 자료요건에 관한 토의문서

◇ 본 위원회는 제48차 JECFA회의에서 소수 축종을 위한 자료요건에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음이고 보고 되었음. 본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소수 축종에 대한 동물약품 최대 잔류허용한계 설정을 위한 자료 요건에 관한 토의문서를 준비하기로 한 뉴질랜드 대표의 제안을 수락하고, JECFA의 FAO사무국은 제12차 CCRVDF에서 검토하기 위하여 제52차 JECFA에서 이 문제를 토의한 관련 서류의 제출에 동의 하였음.

■ 기타 사업 및 앞으로의 과제

◇ 특별히 토의할 기타 업무는 없었음.

■ 차기 회의 일정 및 장소

◇ 제12차 CCRVDF는 잠정적으로 약 18개월 후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정확한 일자와 장소는 Codex와 주최국 정부 사무국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음.

11) 종합 의견

CODEX 식품중 동물약품잔류 분과위원회는 UN의 FAO/WHO 합동 식품공전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8개 전문분과위원회 중 축산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동물약품의 안전사용과 이들 동물약품의 축산물내의 잔류 방지로 인류의 보건향상 및 국제간의 공통된 규격의 제정으로 식품의 교역 증대와 무역분쟁의 해소를 위하여 설치된 전문위원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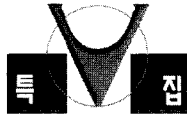
본 위원회의 토의내용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에 사용하는 동물약품의 안전한 사용으로 축산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품의 생산 증대와 함께 이들 약제의 잔류로 인한 사람에서의 공중보건학적 피해방지를 위한 참가국들간의 연구내용, 제도, 규제활동 등이 주로 토의되고 있었음. 본 위원회에 보고되는 내용은 동물약품을 개발한 선진 각국의 당해 약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각종의 독성시험 결과), 잔류분석 방법, 동물약품의 사용규제 내용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 과학적으로 선진국이고 축산물의 생산과 교역 및 소비가 많은 나라들이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었고 그밖의 다수의 국가들은 이러한 각국의 연구동향을 수집하는 상황이었음. 동물약품의 사용규제와 축산물에서의 잔류에 대한 각국의 동향은 축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동물약품의 적절한 사용은 인정하면서 축산물에의 잔류는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잔류허용한계치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었음. 그러나 축산물위생과 검역에 대하여는 각국의 입장을 반영하게 되며 각국의 기준이 상이하므로 무역에서는 수입국의 입장이 강조되며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기준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본 위원회의 권고 및 결정사항은 국제간의 무역거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본 회의에서 검토되는 많은 동물약품들은 사용조건, 잔류허용한계 및 최신 잔류분석법의 확보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참가국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

회의는 점점 더 전문화되어가고 있었으며 회의에서 사용하는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회의 공용어) 간의 감각의 차이로 용어의 정의나 규약의 제정에는 이의가 속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각국 대표들은 산업계와 연계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축산물 중의 잔류규제활동 등을 수출상대국 대표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거나 연구결과를 토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우리나라도 본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현재 우선평가대상 동물약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현황, 잔류실태조사, 기존 분석법의 개량 보완,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과학적인 성적을 근거로 한 검토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조사 연구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인력, 제도 시설의 보완과 유관 연구기관의 연결을 이룩할 수 있는 거국적인 조직이 필요함. 본 회의의 성격상 앞으로 정책입안부서, 연구부서, 산업계가 함께 참석하여 축산식품중의 동물약품 잔류규제의 중요성을 재 인식하고 분야별 발전 방향을 찾아내도록 하여야 하며 축산물 중의 잔류물질 규제가 국민의 보건향상과는 다르게 수입개방에 대비한 수입규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서는 안될 것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본래의 목적은 국제간에 합의된 식품의 표준규격을 설정하여 지역적으로 국가간에 커다란 불균형을 이루는 식품의 생산을 국제교역을 통하여 해소하여 세계인류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임.



III. 기 타 사 항

본 회의는 실무회의(JECFA,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관한 소위원회, 기타 국제기구)의 토의결과를 추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실무회의에서의 토의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실험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있었음. 특히 잔류허용한계의 설정은 독성평가 시험결과에 의한 안전성, 잔류물질 각각에 대한 분석방법 및 당해 분석방법의 국제적인 실험실간의 공동연구를 통한 보증을 요구하는 바 국내에서도 이에대한 준비가 필요함.

수집 자료 목록

- ①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Procedural Manual 10th edition (FAO/WHO, 1997)
-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업무처리 절차 규정집 최신 개정판
- ② Report of the Twenty-second Session of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FAO/WHO, 1997)
- 제22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총회) 보고서
- ③ Evaluation of Certain Veterinary Drug Residues in Food(WHO Techn Report Series 876, 1998)
- 클렌부테롤 등 14종의 동물용의약품 평가보고서
- ④ Evaluation of Certain Veterinary Drug Residues in Food(WHO Techn Report Series 876, 1998)
- 목시텍틴 등 13종의 동물용의약품 평가보고서
- ⑤ Residues of Some Veterinary Drug Residues in Animals and Foods(FAO/WHO, 1997)
- 세프치오휴르 등 9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가축체내대사 및 잔류에 관한 평가보고서
- ⑥ Risk management and food safety(FAO/WHO, 1997)
- 식품 안정성확보를 위한 위해성 평가 방법집
- ⑦ Animal feeding and food safety(FAO, 1997)
- 축산식품 안정성확보를 위한 가축사료와 사양관리에 관한 보고서
- ⑧ Validation of analytical methods for food control(FAO, 1998)
- 식품 품질관리에 적용하는 분석방법의 요건에 관한 기술서
- ⑨ Food consumption and exposure assessment of chemicals(FAO/WHO, 1997)
- 화학물질에 대한 식품의 섭취와 노출에 관한 연구보고서
- ⑩ Food Regional Diets(WHO, 1998)
- 식품유래 유해물질의 오염을 추정하기 위한 지역별 식품 섭취량 조사서
- ⑪ Guidelines for predicting dietary intake of pesticides residues(FAO/WHO, 1997)
- 잔류농약에 의한 인체 오염을 추정하기 위한 지침서
- ⑫ Protecting the Crown Jewels of Medicine(CSPPI, 1998)
- 양식어류에서 항생제 내성문제와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

